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12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「하수도법」 제26조제3항에 의거 중수도 사용업체의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함으로서, 중수도 사용을 제고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 (안 제41조제1항제3호)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

- 「하수도법」 제26조제3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· 제139조제1항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41조(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) (생략)	제41조(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) (현행과 같음)	· 하수도법 요금 감면 조항 적용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
3. <삭 제>	3.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	
4. ~ 8. (생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

관 련 법 령

◎ 하수도법

제26조 (중수도의 설치)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◎ 지방자치법

제136조 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◎ 지방공기업법

제22조 (요금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1992·12·8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,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1980·1·4, 1992·12·8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2.3.25>

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